

국회의원(강선우) 징계안

의안 번호	11708
----------	-------

요구연월일 : 2025. 7. 24.

요 구 자 : 유상범 · 김은혜 · 이인선
박성훈 · 최수진 · 박상웅
서명옥 · 조승환 · 최은석
곽규택 · 조지연 · 강선영
박수민 · 조은희 · 서범수
김민전 · 김소희 · 김장겸
박준태 · 박충권 의원
(20인)

주 문

국회의원(강선우)를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회의원 강선우는 2025년 6월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

명된 후, 2025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아래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음.

가) 세금 탈루

- 후보 지명 이후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몰아 납부
 - 최근 5년간 총 4건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후보자 지명 직후 3건 납부)

나) 부동산 투기

-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복합건물 개발
 - 약 2.5억원 차익(예상). 부지 매입(6.6억, 2018년), 매각(16.5억, 2021년)
 - 배우자가 시공자로 복합건물 신축

다) 갑질 전력

- 전직 보좌진 제보(쓰레기 처리, 비데 수리 등) 언론 보도(7.9.(수) SBS뉴스8 보도)
- 5년간 보좌진 46번 교체

라) 학문적 부정행위

-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조교수 재직시 부정행위 제보
 - 학기 중 학교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
 - 개인사정을 이유로 강의 방식을 임의 변경하고 한국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제보

마) 이해충돌

○ 배우자 관련 사항

-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 시 배우자 바이오신약 개발 엑셀세라퓨틱스 감사 재직
-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일 때 개최한 토론회(2020년 8월 5일)에 배우자 근무 회사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
- 스톡옵션 행사 때 비과세 한도 늘려주는 특례법을 공동발의 했고, 본회의 통과 후 배우자는 근무 회사로부터 스톡옵션 받음

다. 국회의원 강선우는 청문회 때 밝혀진 각종 의혹으로 국회의원 직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를 초래했고, 성평등, 청소년 정책 등 국민적 현안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는 의혹 대응에 급급해 업무 차질이 발생했음.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여성·아동 인권 및 성평등 관련 협력기구들과 교류가 중요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보좌진 인권 침해’와 ‘위력 행사’ 의혹이 있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의문 제기 등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시켰음.

라. 이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금지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명시한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그리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마.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게 명시 하고 있으나,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위원에 대해 예외로 두고 있음. 이는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청렴의 의무를 강조하여 국민을 위해 더 일할 책임감을 강조함 것임.

바. 국회의원 강선우의 각종 의혹을 외면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헌법」이 부여한 헌정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